#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용기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3154

발의연월일: 2020. 8. 21.

발 의 자:전용기・양정숙・한준호

김남국 • 이원욱 • 임오경

정청래 · 최종윤 · 박용진

고영인 의원(10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코로나19로 감염병에 대한 사회적 경계가 엄중한 가운데 최근 집회 관리자의 방역조치 미흡 등 무분별한 집회 행위와 관련 단체의 의도 적인 전파매개행위를 통한 전파 노력 등으로 인하여, 감소세로 접어들 었던 코로나 감염자 수가 폭발적으로 상향되고 코로나 경계 조치를 강화되는 등 공공의 안녕과 질서가 해쳐진 바 있음.

현행법에 따라 방역당국과 행정관청이 이러한 집합행위를 제한하는 조치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법 위반 시 경미한 과태료 조치와 구상권 청구의 법적 근거 미비로 인해 위법행위에 대한 경각심이 저조한 한편, 전파매개행위에 대한 별도의 금지 조항이 미비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감염병 사태의 심각성을 감안하여 방역당국의 집합행위 금지행위를 위반할 경우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의 예를 참고하여

형량을 징역형 수준으로 제고하고, 징벌적 손해배상의 형태로 구상권 청구의 근거를 마련하며 감염자 또는 감염병의심자에 의한 악의적인 감염병 전파노력을 차단함으로써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하려는 것임(안 제35조의3, 제49조제3항, 제78조제2호의2, 제79조제3호의3, 제 83조제1항제5호 신설 및 같은 조 제2항 삭제).

#### 법률 제 호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5조의3(재난 시 전파매개행위의 금지) 감염자 또는 감염병의심자는 감염병에 관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주의 이상의 예보 또는 경보가 발령된 후에는 국민 건강의 증진 및 유지에 해가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다른 사람에게 적극적으로 전파매개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9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제2호에 따른 조치를 위반함에 따라 감염병이 확산된 경우 그 조치를 위반한 자에게 제64조부터 제6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비용의 3배를 넘지아니하는 범위에서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감염병 확산의책임에 따른 위반의 정도 및 비용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8조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2. 제35조의3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전파매개행위를 한 감염자 제79조에 제3호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3. 제49조제1항제2호의2의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관리자·운영자 법률 제17475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83 조제1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한다.

5. 제35조의3를 위반하여 전파매개행위를 한 감염병의심자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0년 10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질병관리청장에 관한 경과조치) 제49조제3항의 개정규정 중 "질병관리청장"은 2020년 9월 11일까지는 "보건복지부장관"으로 본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lt;신 설&gt;</u>	제35조의3(재난 시 전파매개행위
	의 금지) 감염자 또는 감염병의
	심자는 감염병에 관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제
	2항에 따른 주의 이상의 예보
	또는 경보가 발령된 후에는 국
	민 건강의 증진 및 유지에 해가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다른 사
	람에게 적극적으로 전파매개행
	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9조(감염병의 예방 조치) ①・	제49조(감염병의 예방 조치) ①・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u>&lt;신 설&gt;</u>	③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
	1항제2호에 따른 조치를 위반함
	에 따라 감염병이 확산된 경우
	그 조치를 위반한 자에게 제64
	조부터 제68조까지의 규정에 따
	른 비용의 3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감염병 확산의 책
	임에 따른 위반의 정도 및 비용
	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
	<u>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u>

제7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 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 2. (생략)

<신 설>

3. (생략)

제7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 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 3의2. (생 략) <u><신</u> 설>

4. · 5. (생략)

법률 제17475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83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한다.

1. ~ 4. (생 략)

제78조(벌칙)
<u>.</u>
1. • 2. (현행과 같음)
2의2. 제35조의3을 위반하여 다
른 사람에게 전파매개행위를
한 감염자
3. (현행과 같음)
제79조(벌칙)
<u>.</u>
1. ~ 3의2. (현행과 같음)
3의3. 제49조제1항제2호의2의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관리자
<u>· 운영자</u>
4.・5. (현행과 같음)
법률 제17475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83조(과태료) ①
<u>.</u>

<신 설>

② 제49조제1항제2호의2의 조 치를 따르지 아니한 관리자·운 영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 태료를 부과한다.

③ ~ ⑤ (생 략)

5. 제35조의3를 위반하여 전파 매개행위를 한 감염병의심자 <삭 제>

③ ~ ⑤ (현행과 같음)